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. 11. 26 선고 2024가단14496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웅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12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,2,3,4,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가)부분 361㎡를 인도하라.
2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금진

별지